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62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김승수·김선교·서지영
안철수·조지연·이헌승
조은희·박수영·김소희
진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는 의무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 개인 간 과실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했으나 즉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충처리민원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영조물책임보험 내 별도 특약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도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보험 가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직장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보험 가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u>② 직장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